## KOSHA GUIDE

C - 38 - 2011

방을 위하여 환기 등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19조(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 등) 내지 제645조(안전대 등)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5.3 슬립업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슬립업 작업 전에 콘크리트의 경화 깊이를 측정하고 탈형 후 콘크리트가 부담 하는 전(全) 하중과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, 품질,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슬립업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슬립업 속도기준은 구조물의 강도와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10~17 cm 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<표 1>과 같이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.

일평균 기온(℃)	형틀 높이(mm)	1 일 슬립업량(m)	1 시간당 슬립업량(cm)
25 이상	1,250	4	17
10~25	1,250	3	12.5
10 이하	1,250	2.5~3	10~12.5

<표 1> 슬립업 속도기준

- (3) 슬립업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유압잭이 균등하게 작동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.
- (4) 슬립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대는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.
- (6)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, 시공 중에는 최소 4 시간 이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- (7) 슬립업 중에도 각 작업대 부재 이음부의 볼트 체결 및 이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유압잭의 고장이나 콘크리트 등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 피하게 슬립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거푸집과의 부착으로 인한 균